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77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문금주・한민수・강준현

문정복 · 서삼석 · 이정문

이연희 · 김영배 · 김원이

조인철 • 조계원 • 박홍배

박해철 • 주철현 • 정진욱

김우영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농산물등"이라 함)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농산물등의 유통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이행 여부 확인 및 효과적인 유해 물품 적발 등을 위해서는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이와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한편, 현행법은 세금 징수의 강제적 절차에 해당하는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에서 2021년부터 "체납

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징수의 경우 그 근거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통한 수입 농산물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미납 세금에 대한 징수 용어정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4항, 제10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6조의2제4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한다.

제2장의2에 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 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 자료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 3. 그 밖에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의2(과징금) ① ~ ③ (생 제6조의2(과징금)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 ----국세 강세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4(자료 제공 및 전산망 <신 설> 이용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은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 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 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 자료

-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른 사업자등록 자료(휴업・폐업 정보를 포함한다)
- 3. 그 밖에 수입 농산물등의 유 통이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하는 자료